

[별첨] 과거 세월호참사 등 특별법과 비교 도표

항목	과거 특별법	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	비교
법안 명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▪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 ▪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	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진상규명,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 ▪ 전체 과정에서 ‘피해자권리보장’을 위한 목적을 강조함
피해자 범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유가족 ▪ 생존자 ▪ 지역주민 상인 등 (포항지진특별법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유가족 (3촌이내 혈족 포함) ▪ 생존자 ▪ 구조자 ▪ 지역주민 상인 등 	확장
피해자 권리	명시적 규정 없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정보를 제공받고 조사에 참여할 권리 ▪ 차별받지 않고, 혐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▪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▪ 기억, 추모,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▪ 생활지원·의료지원·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▪ 추모사업 등에 참여할 권리 ▪ 배상·보상을 받을 권리 ▪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권리 	신설

진상 조사 기구	위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독립기구, 합의제 행정기관(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,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·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) 국무총리 소속(4·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독립기구, 합의제 행정기관(10·29이태원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) 국무총리 소속(10·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) 	동일
	조사 범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참사의 원인 규명 정부대응의 적정성 제도개선 대책 수립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정부대응의 적정성 (사건 은폐, 피해자 권리 침해에 관한 내용 포함) 제도개선 대책 수립 피해자의 피해실태, 지원대책 점검 등 	거의 동일
	조사위원회 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9명 위원(상임위원 5인) 국회가 위원 추천 국회의장 1인, 여당 4인, 야당 4인 추천 여당 2인, 야당 3인, 유가족 3인 (세월호선체조사위법) 사례도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7명 위원(상임위원 5인) 추천위원회가 위원 추천 추천위원회는 여:야:유가족 3인씩 구성 추천위 구성 지연방지기간 설정 (법 공포 후 30일 이내 추천위원회 구성, 14일 이내 위원 추천, 미추천시 유가족에게 추천권 유보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쟁 방지 위해 추천위원회 방식 도입 추가 (추천위 구성 지연방지기간 설정)
	활동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조사개시(2018.12.11.) 후 2022.6.10.까지 보고서 작성기간 별도 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조사개시 후 1년 6개월 내에서 연장가능 3개월의 보고서 작성기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조사기간 축소 최장 9개월 연장
	조직과 지원구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소위원회, 자문기구 설치 가능 조사관 120명 이내 사무처(지원조직)은 별도 설치 공무원 파견 (정원 포함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소위원회, 자문기구 설치 가능 조사관 60명 이내 사무처(지원조직)은 별도 설치 공무원 파견 30명 이내 (별도 정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조직규모 축소
	권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조사 국정조사기록, 재판기록 등 열람권 청문회 실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조사 국정조사기록, 재판기록 등 열람권 청문회 실시 	‘청문회 출석시 동행명령’ 추가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조사 불응시 동행명령 ▪ 압수·수색영장 청구의뢰 ▪ 고발 및 수사요청권 ▪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▪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조사 및 청문회 불출석시 동행명령 ▪ 압수·수색영장 청구의뢰 ▪ 고발 및 수사요청권 ▪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▪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권 	
	활동결과 보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종합보고서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 ▪ 국가기관등은 권고내용 이행 및 국회 보고 의무, 불이행시 국회의 징계 요구 ▪ 자료기록단 설치 ▪ 자료 사본의 추모시설 송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종합보고서 국회의장과 대통령에 보고 ▪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권고내용 이행실태 점검, 불이행시 국회의 징계 요구 ▪ 자료기록단 설치 ▪ 자료 사본의 추모시설 송부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강화 (국회의장, 소관 상임위원회 명기)</p>
	피해자 참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조사신청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조사신청권 ▪ 조사과정에서의 참여권 (자문기구 참여, 조사위원회 및 소위원회 참석, 발언) ▪ 진술권 (조사위원회의 의견청취) ▪ 정보접근·열람권 (정보공개보다 높은 수준)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강화 (조사과정에서의 참여권, 진술권, 정보접근·열람권)</p>
	피해자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생활지원금, 의료지원금 (간병비 포함) ▪ 심리상담 지원 ▪ 근로자의 치유휴직, 금융거래 지원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생활지원금, 의료지원금 (간병비 포함) ▪ 심리상담 지원 ▪ 근로자의 치유휴직, 금융거래 지원 등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동일</p>
	배상 및 보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▪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, 손실보상금 지급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규정 없음</p> <p>(국가배상법,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등의 배상·보상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규정만 있음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·</p>
	추모사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피해자 및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▪ 추모시설 설치 등 추모사업 실시 ▪ 추모재단 설립 및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피해자 및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▪ 추모시설 설치 등 추모사업 실시 ▪ 추모재단 설립 및 지원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동일</p>
	벌칙 / 과태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조사위원회 직무방해시 형사처벌 (폭행, 협박, 위계의 경우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조사위원회의 직무방해시 형사처벌 (위력에 의한 직무방해 추가)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강화</p>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청문회 불출석, 위증 등 형사처벌 ▪ 허위자료 제출, 조사 또는 동행명령 불응 시 과태료 부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청문회 불출석, 위증 등 형사처벌 ▪ 조사방해, 허위자료 제출, 조사 또는 동행명령 불응시 형사처벌 	
기타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공익신고자보호법 준용 	신설